



뉴개인연금혼합투자신탁(S-1 호) 약관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위탁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회사"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하나 **UBS** 자산운용주식회사를 말한다.
2. "수탁회사"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에 체결한 투자신탁계약에 의하여 발행한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기명식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명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 "판매회사"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법 제 10 조 제 1 항 제 2 호의 수익증권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익권"이라 함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에 체결한 투자신탁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에 대한 권리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권,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청구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6. "수익증권"이라 함은 제 5 호의 수익권을 증권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모집"이라 함은 향후 발행될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매출"이라 함은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발행된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8. "매각"이라 함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환매"라 함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일부해지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수익권 좌수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준가격"이라 함은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수익자간의 수익증권매매에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 및 한국선물거래소를 포함한다.)의 개장일을 말한다.
1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약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약관의 효력발생) ① 이 약관은 위탁회사가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의 청약을 하거나 또는 매입한 때에 이 약관이 정한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의 업무) ①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매각 및 권리의 행사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 수탁회사에게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한다.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위탁회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집행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의 보관등 투자신탁재산의 관리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위탁회사의 지시가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배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감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내용을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제 5 조(투자신탁의 원본 및 수익권좌수) ①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원으로 하고, 수익권의 총좌수는 5,000 억좌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수익권의 총좌수 범위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시기 및 규모 등은 수익증권의 매각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탁회사가 정한다.

제 6 조(투자신탁의 설정) ①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위탁회사는 제 5 조 제 1 항의 투자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모집에 의해 받은 청약금으로 수탁회사에 납입하거나,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수탁회사에게 납입한다.

②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탁회사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

탁금은 추가설정을 하는 날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 2 항의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 원본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④ 이 투자신탁을 매출방식에 의하여 설정하는 때의 최초의 수익자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로 한다.

제 7 조(투자신탁계약기간) ①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투자신탁회계기간) ①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 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② 제 1 항의 본문규정에 의한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이하"이익분배금"이라한다.)은 제 2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수익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 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①수익증권은 금강위에 신고하여 수리된후 위탁회사가 이 투자신탁의 주요내용 및 신탁금의 납입등에 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수익증권은 책형으로 발행한다.

제 11 조(수익증권의 매각) ① 판매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매각한다.

② 수익증권의 매각가격은 다음 각호에 따르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 제 10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1. 모집에 의한 경우에는 모집청약금의 최종납입일 다음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 매출에 의한 경우에는 수익증권 매입청약일 다음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③ 수익증권의 매각단위는 제 10 조제 2 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익증권의 최소 발행좌수 단위로 한다.

제 12 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투자신탁계정 원장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제 1 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유가증권의 평가는 관계법령 및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비상장채권의 평가는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에 잔존기간을 반영하고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를 감안한 조정수익률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한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위탁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유가증권등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한다.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하고 이 경우 1 좌는 1 원으로 한다.

④ 위탁회사는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등

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증권을 매입한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등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회사의 해산·허가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7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제 3 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하고 환매대금은 신탁재산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된 현금으로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 2 조제 10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일이 위탁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증권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위탁회사·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 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투자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④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제 14 조(개인연금투자신탁수익증권저축) ① 수익자는 "뉴개인연금투자신탁수익증권저축"(이하"수익증권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익증권저축은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하는 수익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매입한 수익증권을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저축금의 납입 및 수익증권의 내

역을 증명하는 개인연금투자신탁수익증권저축통장을 교부한다.

④ 수익증권저축의 종류·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뉴 개인연금투자신탁수익증권저축약관"(이하 "저축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저축자는 저축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수수료의 면제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제 15 조(수익증권의 상장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상장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 ①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운용한다. 다만, 제 1 호 및 제 2 호의 유가증권등에 신탁재산의 20%이상을 투자한다.

1.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를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60%이하로 하며, 다음 각목의 범위내에서 투자·운용한다.
 - 가. 주식관련사채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30%이하로 한다.
 - 나. 사모사채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3%이하로 한다.
 - 다. 채권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제 8 항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2. 주식(장외주식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60%이하로 하며, 다음 각목의 범위내에서 투자·운용한다.
 - 가. 장외주식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10%이하로 한다.
 - 나.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제 8 항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3. 제 1 호 및 제 2 호 본문의 투자규모 산정은 현물유가증권(주식, 채권)투자금액과 현물유가증권의 가격변동과 동일한 방향의 파생상품 투자금액【주가지수선물 매수거래 미결제약정액, 금리선물 매수거래 미결제약정액, 콜옵션매수 지불프리미엄, 풋옵션매도 거래규모(주가지수옵션행사가격 X 거래수량 X 100,000 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4.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5%이상으로 한다.
5.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5%이하로 한다.
6. 제 1 호 및 제 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개월, 투자신탁계약해지일 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이전 1 개월간은 신탁재산의 운용비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제 1 호에서 "채권에의 투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③ 제 1 항제 1 호에서 "사모사채에의 투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채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5 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것
2.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등급이 A 등급이상 인 것

④ 제 1 항제 2 호에서 "주식에의 투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⑤ 제 1 항제 2 호에서 "장외주식에의 투자"라 다음 각호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5 항에서 규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주권
2.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 2 조제 8 항의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권
3.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 2 조제 9 항의 협회등록 공모 주권
4.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주식을 인수하는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⑥ 제 1 항제 4 호에서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 2 호의 경우에는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이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
2.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매입
3. 투자일로부터 만기가 6개월 이내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매입
4.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
5.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방법

⑦ 제 1 항제 5 호에서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2. 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⑧ 제 1 항에서 "채권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라 함은 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금리선물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하고,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가지수선물·주가지수옵션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신탁재산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⑨ 제 3 항 제 2 호 및 제 6 항 단서조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 17 조(투자신탁 운용의 제한) ①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 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에 한한다)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위탁회사가 운용을 지시하는 전체 투자신탁재산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여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3. 위탁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법시행령 제 16 조제 4 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유가증권을 투자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4.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한 유가증권을 제 3 호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투자신탁재산의 이익을 도모하는 유가증권등의 거래행위
6. 위탁회사가 법시행령 제 16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와의 거래 행위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등의 과다취득행위등 수익자보호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 가. 위탁회사가 그 총투자신탁재산으로 전체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주식을 제외한다)에 계열회사 전체의 당해 위탁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나. 이 투자신탁재산의 7%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재산의 2%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16 조제 4 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행위

② 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가격변동 및 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6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금감위의 명령 또는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른다.

제 18 조(투자신탁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위탁회사가 취득하는 위탁회사보수와 판매회사(위탁회사가 직접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회사를 말한다)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및 수탁회사가 취득하는 수탁회사보수로 구분한다.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설정일

로부터 매 6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또는 전부해지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중 투자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매일의 투자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06. 7. 1, '10.5.3, '13.5.31 본항개정)

1. 위탁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3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9.0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5

제 19 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 1 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차입금의 이자,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투자신탁의 외부회계감사비용, 유가증권예탁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등을 말한다.

제 20 조(손익의 귀속)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투자신탁재산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21 조(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① 판매회사는 발행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를 위탁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때에는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를 위탁회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탁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지금액은 해지좌수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의 처분등에 의하여 현금화한 금액으로 하

되, 해지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해지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일부해지대금을 판매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대상 신탁재산중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어 일부해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 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대금을 판매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22 조(투자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따라 수익권의 총좌수가 50 억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신고하고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 전부에 대해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할 때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 30 조제 1 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다.

제 23 조(미수수입금등의 우선충당) ① 위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시 미수수입금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회사와 협의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자금으로 우선충당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충당금의 이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수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24 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지급) ① 수탁회사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상환금등을 위탁회사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위탁회사에게 인도한다.

②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위탁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위탁회

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 이익분배금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다음영업일에 이 투자신탁에 재투자 (이익분배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상환금 등은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 개월이내에 속하는 날로서 위탁회사가 지정하는 날을 지급개시일로 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지급 한다.

④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회사는 법 제 2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으로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5 조(상환금등의 시효)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10 년간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상환금등은 위탁회사[또는 판매회사]에게 귀속된다.

제 26 조(신탁재산의 회계감사등) ①위탁회사는 법 제 26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및 위탁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약관의 변경) ①위탁회사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금감위는 공익 또는 수익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탁회사에게 이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회사는 약관을 변경한 후 변경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이를 영업점포내에 1 월이상 게시하고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 30 조제 1 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또는 신문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서 정하는 게시기간내에 수익자가 이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28 조(위탁회사의 영업양도) ①위탁회사는 수탁회사와 협의한 후 이 투자신탁에 관한 영업을 다른 위탁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위탁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1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내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것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 30 조제 1 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 투자신탁에 관한 위탁회사의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익자는 제 2 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의서 제출기간 내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서 제출 및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없는 수익자는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29 조(수탁회사의 변경) ①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영업의 일부·전부양도 및 정상적인 수탁업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회사의 동의 및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수탁회사가 그 업무를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탁회사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수탁회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탁회사는 수탁회사의 사임에 따라 새로운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또는 수탁회사의 변경에 대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경우 위탁회사[또는 판매회사]는 수탁회사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계약의 해지내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 30 조제 1 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 위탁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위탁회사[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6 개월마다 법 제 27 조제 4 항에서 규정한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31 조(관계법령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2 조(관할법원) 위탁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다만,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0 년 8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9.1)

(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사항은 200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1. 비상장채권의 평가 : 채권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기준
2. 채권평가비용 : 신탁재산부담)

부 칙(2002.1.2)

(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사항은 2002 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국채등 투자비율 : 100%)

부 칙(2002.1.2)

(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사항은 2002 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유가증권대여, 금리스왑 신설)

부 칙(2002.7.1)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주 5 일근무로 인한 토요일 영업일 제외)

제 2 조(영업일) 이 약관의 영업일 산정시 토요일은 제외한다.

제 3 조(수익자의 우대) 2002 년 6 월 30 일 이전에 가입한 수익자의 환매수수료 면제일이 토요일(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을 직전영업일에 환매하더라도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보수배분을 변경)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사항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판매보수 변경)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사항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보수 인하)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사항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환매수수료 삭제)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사항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위탁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종

수탁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태평로 2가)
주식회사 신한은행
은행장 정상혁
지배인 정영철